국민은행채권 등록필증(통장) 약관

이 국민은행채권 등록필증(통장)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가 국민은행채권 등록필증(통장)(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조 (등록필증의 발급)

- ①등록필증은 국민은행채권(이하 "국은채"라 한다)을 매입자 또는 소지자가 은행에 등록 청구한 경우에 현물에 갈음 또는 교환하여 발급한다.
- ②은행에 국은채를 등록할 경우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과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는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조 (실명거래)

-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이 등록필증을 발행한 영업점에서 모든 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은행이 따로 정하는 경우 다른 영업점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 4조 (결제계좌의 지정)

- ①거래처는 이 등록필증에 의한 국은채의 원리금 수령 등을 위해 은행에 개설된 결제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 ②거래처가 제①항에 의한 결제계좌 지정시에는 은행은 제6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이 등록필증에 의한 국민채의 원리금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 기일(은행의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결제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상환기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까지 처분제한사유(질권설정, 압류 등)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금처리하지 아니한다.

(통장약관 4-1)

- ③이 등록필증의 등록내용은 제②항의 결제계좌 입금처리 즉시 자동 말소되고 제 6 조 제②항에 의한 지급청구서의 제출은 생략한다.
- ④거래처가 제①항에 의한 결제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제 5조 (최저 거래금액)

- ①할인채, 복리채의 최저 거래금액은 거래 1건당 동일회차기준 액면금액 일백만원 이상 일백만원 단위로 한다.
- ②이표채의 최저 거래금액은 거래 1건당 동일회차기준 액면금액 일백만원 이상 일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 6조 (지급)

- ①이 등록필증에 의한 원리금은 각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은행의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후에 거래처의 청구가 있을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처의 의뢰에 따라 은행이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가능 국은채인 경우에는 상환기일이전이라도 거래처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 ②거래처가 제①항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을 적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감과 일치하게 날인하거나 서명한 소정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이자)

- ①이 등록필증에 의한 이자는 원단위로 은행이 정한 이율과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②이 등록필증에 의한 중도해지이자는 경과기간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 ③이 등록필증에 의한 만기일 경과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비영업일인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단리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④은행은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이율표를 영업점에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때에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한다.
- ⑤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 8조 (현물반환)

거래처가 현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물을 반환한다.
<u>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u>
아니한다.

제 9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 ①거래처는 등록필증 또는 도장을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에는 곧 서면신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 ②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신고해야 한다.
- ③제①항,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④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조 (등록필증의 재발급 등)

제 9 조에 따라 등록필증·도장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1조 (통지방법)

- ①은행 국은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②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따라 은행이 국은채를 임의처분하거나 상계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 9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비교,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 지급하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통장약관 4-3)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 명세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한 계좌는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거래처가 제 9 조 제①항·제②항·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3조 (소멸시효)

이 등록필증에 의한 원리금 청구권은 원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이 등록필증의 국은채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